

## 제천시 기업유치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26
----------	------

제출년월일 : 2007년 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 1. 제안이유

-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투자유치에 활력을 불어 넣어 제천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확보

### 2 주요내용

- 수도권이전 기업 지원과 타 시·도 기업 지원 구분(안 제16조 ~ 제28조)
- 공장증설시 시설투자비 지원(안 제20조)
- 사업지원서비스업 및 대규모 사업서비스업 지원(안 제22조~제23조)
- 여성기업인 및 장애인기업인 특별지원(안 제24조)
- 관내 중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안 제25조)
- 대규모의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안 제27조)
- 산업단지 기업 지원(안 제28조)
-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안 제29조 ~ 제34조)
-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안 제35조)

### 3. 근거법령 : 붙임

### 4. 의안전문 : 붙임

###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첨부 1. 전면개정 전후 비교표  
2. 관계법령 1부.  
3. 입법예고 사본 1부.

## 제천시 기업유치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기업유치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기업”이라 함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말한다)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하 “타 시·도”라 한다)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제천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2.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4.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5.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6. “개별입지”라 함은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7.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약서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
- 나.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
-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8.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이전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시로 이전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이전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시로 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사업지원에 관한 서비스업을 말한다.
1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1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1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 제2장 투자유치 지원 등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제천시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
  5.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의견과 경험을 가진 자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팀장이 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

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천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투자유치 자문관)** ①시장은 국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제천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료 및 국·내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일괄 처리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세 감면)** 시장은 이전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천시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3장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설치 운용

**제12조(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①시장은 국·내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제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보조금, 출연금, 차입금 등

③시장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④기금의 존속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보조금
2. 임대용 토지의 매입비
3.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
4.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와 유치된 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팀장이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장 수도권 기업 투자 지원

**제16조(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 ①시장은 별표 1의 수도권내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설치비 등(이하 "투자"라 한다)을 포함한 투자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대 시비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지역에서 시로 이전 중설하는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자원부 지원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7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수도권내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지방이전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 원 이하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수도권내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지방이전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6월의 범위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19조(타 시·도 기업 이전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별표 2의 지원기준에 의거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제천시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 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건축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될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제3호에 해당될 경우 3년간 임대료의 50퍼센트까지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신규건물 건축시 :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2. 기존건물 취득시 : 건물취득비
3. 건물임대시 : 임대료

③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안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연구소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시설장비 구입 및 이전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안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공장 증설시 시설투자비지원)** 시장은 시 지역내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인 업체가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신규증설의 경우 : 토지매입(임대료), 건축비, 시설설치비 포함
2. 기존공장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 건축비, 시설설치비 포함

**제21조(타 시·도 이전기업 등의 준용)** 시장은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이나 공장증설 기업에 대하여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하되, 최고 지원금액이 각각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①시장은 고용효과가 큰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시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건물 임대료와 시설·장비 설치비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인 경우의 건물임대료 지원은 연간 임대료의 50퍼센트 이내로 3년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인 경우 건물 임대료 지원은 연간 임대료의 50퍼센트 이내로 3년간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고용·훈련에 소요된 투자비용 지원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대규모 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하여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사업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총 투자금액의 5%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대 50억까지 지원하되, 고용·훈련에 소요된 투자비용 지원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0억 이상 투자기업에 한한다.

**제24조(여성기업인 및 장애인기업인 특별지원)** 시장은 지원대상 기업중 여성기업인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기준 외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제25조(관내 중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에서 3년 이상 가동중이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건물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비용(부지매입비 제외)의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지원한도)** 제1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

1. 1일 상시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300억 이상 투자기업
2. 고용창출 등 기타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산업단지 기업지원)** ① 시장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에 전용 공업용수 공급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용공업용수가 공급될 때까지 「제천시수도급수조례」 제28조의 영업용과 전용공업용과의 손실차액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장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

**제29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외국인 투자기업의 준용)**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하되, 지원금액은 각각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32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컨설팅 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컨설팅 보조금은 외국인투자액의 1퍼센트 범위안에서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총 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 및 매각 대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장 보 칙

**제35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전일로부터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년 이내에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시장은 보조금 지급시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고용창출 기여도, 인구증가기여도, 투자이행도, 재무상태, 지역업체활용도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제천시의 유치지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투자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보조 조건에 따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7.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당 토지, 건물 등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8.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 못하는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7조(투자유치 성공 보상)** ① 시장은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 보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경우에는 2010년까지 적용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기업 및 산자부지원대상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 수도권내 대상지역(제16조 관련)

구 분	대 상
수 도 권	<p>◆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연수구 송도 매립지* 제외)</p> <p>* 송도매립지는 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 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p> <p>◆ 경기도</p> <p>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파동·이파동·삼파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p> <p>◆ 위 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낙후지역”은 제외</p>

[별표 2]

## 타 시 · 도 지역구분 및 지원기준(제19조 관련)

구분	대 상	지원기준 및 지원업종
타시 · 도 기 업	◆ 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중 별표 1을 제외한 지역 및 시·도에 소 재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및 타 시 · 도에서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기업 (기업의 사정변경으로 설립등기 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li> </ul> </li> <li>○ 이전기업 대상 및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본사 및 공장&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의 전부(본사 또는 공장) 또는 일부가 (본사 또는 공장)이전하는 경우 상시 고용 인원이 50인 이상</li> </ul> </li> <li>&lt;기업부설연구소&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고용규모가 50인 이상, 이전후 고용규모 30인 이상</li> </ul> </li> <li>&lt;문화산업 및 연구·개발기업&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고용구모가 30인 이상, 이전후 고용규모 30인 이상</li> </ul> </li> </ul> </li> <li>※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주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72(정 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 관련업) 및 73(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연 구 · 개발전문기업</li> <li>&lt;집단이전&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규모가 50인 미만인 서로 다른 기업의 공장이 2개 이상 집단화 하여 이전하는 경우</li> </ul> </li> </ul>

구 분	대 상	지원기준 및 지원업종
		<p>○ 지원대상 업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업(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li></ul>

## 전면개정 전후 비교표

항목	구분	현행	개정
		제천시 기업유치촉진 및 기업투자친환경기금운영조례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수도권기업 지원	16조 ~ 18조		(총지원금액 한도 최고 100억원) ○ 투자보조금 (최고 50억원) - 10억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내 ○ 공장증설 지원 최고 50억원
국내기업 지원	19조	○ 태시도 기업 이전비 지원 - 이전보조금(본사) 최고 3억원 - 이전보조금(공장) 최고 3억원 : 3억 초과액 5%내 - 이전보조금(연구소) 최고 3억원 : 투자비용 5%내 - 고용촉진보조금 최고 2억원 - 교육훈련보조금 최고 2억원	○ 태시도 기업 이전비 지원 (총지원금액 한도 최고 50억원) - 이전보조금(본사) 최고 3억원 - 이전보조금(공장) 최고 50억원 : 10억 초과액 5%내 - 이전보조금(연구소) 최고 50억원 : 10억 초과액 5%내 - 고용촉진보조금 최고 2억원 - 교육훈련보조금 최고 2억원
	20~21조	○ 공장증설 투자보조금 지원	○ 공장증설 투자보조금지원 최고 50억원 : 10억 초과액 5%내
	25조	○ 관내중소기업 지원 - 투자비용 5%내	○ 관내중소기업 투자지원 최고 3억 - 10억 초과 투자액 5%내
	22~23조	없음	(총지원금액 한도 최고 50억원) ○ 건물임대료, 시설장비 설치 지원 ① 100인~199인 - 임대료 50%내, 설치비 30%내(각각 2억한도) ② 200인 이상 - 임대료 50%내, 설치비 50%내(각각 4억한도) ○ 고용촉진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24조	없음	(총지원금액 한도 최고 50억원) ○ 지원기준 외에 특별지원
산업단지 기업지원	28조	없음	○ 공업용수 미 공급에 따른 손실차액 보전
투자지원 심의	35조		○ 심의 기준 강화 (선택과 집중) - 고용창출효과, 인구증가기여도, 투자 이행도, 재무상태, 지역업체활용도 등 심의 - 검토결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

##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2007.05.11 법률 제8428호]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역경제활성화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의 고용창출 및 실업해소에 관한 사항
2. 지역금융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물류업 및 유통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투자유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정부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하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낙후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3.9 대통령령 제19927호]

제16조 (기업의 지방이전)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인구밀도

2. 광업·제조업의 출하액

3. 그 밖에 광업·제조업사업체수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의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5.2 대통령령 제20046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8.9, 2003.6.30, 2005.5.26>

제2조 (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 다만,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개정 1997.7.10, 1999.8.9, 2003.6.30, 2005.5.26>

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12.7, 1996.7.19, 1997.7.10, 1999.8.9, 2003.6.30>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 [전문개정 1994.7.4]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 2006.4.28 법률 제7949호]

제7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6.4.28>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1의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 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5. 국·공립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8.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35호], 시행일 2009.2.4,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9, 2002.12.30, 2007.4.6>

1.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2. "지식산업"이라 함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 2의2.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 산업을 말한다.
3. "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3의2. "재활용산업"이라 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산업을 말한다.
4. "자원비축시설"이라 함은 석탄·석유·원자력·천연가스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

처리·유통 시설 및 이를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라. 농공단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6.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 다.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 라.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과 공원조성사업
  -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 바.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 사. 전기·통신·가스·유류·증기 및 원료등의 수급시설사업
  - 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7. "준산업단지"라 함은 도시 또는 도시주변의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제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전문개정 1995.12.2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17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1>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 (계약의 내용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사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기타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5. 파견근로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개시일에 관한 사항
  7. 사업 및 종업의 시작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야간·휴일근무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1>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8.17 대통령령 제20222호]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1998.4.1, 2004.3.17, 2005.2.19>

② 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35호]**

제3조 (정의등)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9.3.31, 1995.1.5, 1998.12.31, 2000.12.23>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자를 말한다.
  3. "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종별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평균소득월액"이라 함은 매년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를 말한다.
  5. "표준소득월액"이라 함은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사업장가입자"라 함은 사업장에 사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7. "지역가입자"라 함은 사업장가입자외의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8. "임의가입자"라 함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외의 자로서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9. "임의계속가입자"라 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 가입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
  10. "연금보험료"라 함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에 있어서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에 있어서는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부담금"이라 함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여금"이라 함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사업장"이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 ②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배우자·부 또는 처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③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당시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06.12.30 법률 제8153호]

- 제62조 (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6.10.4>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6.10.4>
-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표준보수월액에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0.4>
-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9.12.31, 2006.10.4>
-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1.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다만,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 2007.7.27 법률 제8566호]

-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5.24, 2000.12.29, 2003.12.31>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법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증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 5. "외국투자가"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 6.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 6의2.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라 함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7. "출자목적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 나. 자본재
    - 다. 이 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 라.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적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 마.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그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당해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당해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
    - 바.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 기타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
    -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 아.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 8. "자본재"라 함은 산업시설(선박·차량·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부분품·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종자·수목·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당해 사업을 관掌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시설의 최초시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 9. "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 재산권 기타 기술을 양수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을 말한다.
-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제13조 (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개정 2003.12.31>) ①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동법 제36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공장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동법 제38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⑥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3.12.31, 2004.12.31, 2007.4.6>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삭제 <2004.12.31>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 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⑦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가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및 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⑨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⑩제2항 및 제9항의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12.31>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용자, 토지등의 임대료감면 및 분양가액인하(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분 또는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훈련보조금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기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자금지원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과 실적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국가는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보조금등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소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일 것
  - 나. 사업과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이거나 사업과 관련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구성된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 규모가 20인 이상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본조신설 2003.12.31]

제14조의3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 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3.12.31]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4.12.31, 2007.4.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2.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회망하는 지역

② 2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제1항 전단에 의하여 동항 제2호의 지역을 시·도지사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투자가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및 지역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4.12.31>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9, 2007.4.6>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사항(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④ 산업단지중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관리하고, 국가산업단지외의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이를 관리하며,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도지

사가 이를 개발·관리한다. <개정 2004.12.31>

⑤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공장 등의 설립을 위한 새로운 부지의 조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07.4.6>

⑥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은 이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3항에 따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로 본다. <개정 2007.4.6>

⑦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함에 있어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중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 중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7.4.6>

⑧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29, 2007.4.6>

⑨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31>

**제21조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①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1>

1.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2.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당해 기존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

3.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②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전 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주식등의 취득대금을 정산하기 전이라도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2003.12.31>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개정 1999.5.24>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2년이상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6.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1.5 대통령령 제19826호]

제2조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①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5>

1.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2. 국제부흥개발은행·국제금융공사·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3.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 ②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금액을 말하며, 2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을 말한다)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2.24, 2004.1.13>
1.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2.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면서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가.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나.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
- ③법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4.1.13>
1.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2.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  
가.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나. 해외모기업 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④법 제2조제1항제7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재산권"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증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을 말한다. <신설 2001.2.24, 2007.1.5>

⑤법 제2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4.1.13, 2007.1.5>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
2.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3. 「약사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국
4.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5. 그 밖에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⑥법 제2조제1항제7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신설 2001.2.24, 2004.1.13, 2007.1.5>

1.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
2. 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⑦법 제2조제1항제7호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지급수단"이라 함은 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말한다. <개정 1999.5.24>

**제25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동항제 1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2005.3.8>

1. 외국인투자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 및 지정 목적
3.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4. 입주기업의 자격 및 주요 유통업체종
5.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
6. 사업시행방법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67호], 시행일 2007.10.12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2007.5.11 법률 제8423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다. <개정 2007.5.11>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문개정 2006. 5.19 조례 제739호  
일부개정 2007. 1.26 조례 제768호(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인 사업
  -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
  -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중설하는 경우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 할 수 있다.
  -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
  -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중설하는 경우
-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 할 수 있다.
  -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사업
  -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중설하는 경우
  - 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9조 (조성원가 배각)** ①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등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 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 시와 당해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 제천시세 감면조례 개정 2007. 7. 6 조례 제785호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

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

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8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자원부 고시 개정 제2006-56호(2006.5.26)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

다.

4.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5. “개별입지”라 함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6. “입지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중 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약서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 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 나.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8.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보조사업”이라 함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법 및 영(법·영을 합하여 이하 “법령”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이 기준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전관련 협의를 진행중인 기업 및 문의 기업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매 분기초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이전기업의 책무)** 지방이전하는 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 받은 자금을 보조금 요청시 제출한 사업계획

**제6조(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①이 기준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지원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가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이상 소재(기업의 사정변경으로 설립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이전하고, 이전한 전부 또는 일부의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기업을 유치한 경우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소는 해당기업의 연구소가 지방이전하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및 73(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은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이며 이전 후 상시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기업이 지방의 낙후지역(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 지방분공장을 신설 또는 중설하거나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연구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해당기업이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지방분공장을 신설하거나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연구소 등을 설치하면서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
3.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이 50인 미만인 기업이 2이상 집단화하여 지방이전하면서 그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50인 이상이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합이 50인 이상인 경우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는 지방이전기업이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한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 고용 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2년이내에 충족하여야 한다.

⑥지방이전기업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이전기업 유치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다만, 제6조제5항에 의한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여야 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보조금 신청시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이전기업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
3. 이 기준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요청액 등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

당 보조금의 지급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기업지방이전지원심의위원회)**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산업자원부에 “기업지방이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장 : 국가균형발전지원단장

나. 위원 : 10인 이내(산업자원부의 산업정책, 투자정책, 지역정책 등을 담당하는 관계 국장·과장, 관련 업계·학계 등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

2. 성격 및 심의결정

가. 성격 : 심의·의결기관

나. 개최 : 회의개최 사유 발생시

다. 심의결정 :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3. 기능

가. 제18조의 “예외적으로 초과지원이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 및 추가지원 금액의 심의·의결

나. 경제여건변화 및 사정변경으로 지원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내용의 심의

다.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

## 제2장 보조금의 지원

**제9조(입지보조금)**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지상의 공장·건물을 포함하고,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정상분양가·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상임대료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5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내 또는 그 인근에 소재하는 동일 면적의 산업단지내 토지의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이하 “분양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계약체결시부터 1년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삭 제<2006. 5. 26>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보조하는 경우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때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 계약서상의 기간으로 하되 최대 5년 단위로 설정하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 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을 감안하여 3년 혹은 5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 임대료는 임대 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 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때 시중 금리는 임대 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을 감안하여 3년 혹은 5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9조의2(건축비·시설비 등에 대한 보조금)**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이하 "투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5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 시부터 1년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고용보조금)**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지방이전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이하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5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지방이전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이하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5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비율에 대한 특례)**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9조 내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8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제3장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사후관리

**제13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이전기업이 부담하는 경우는 부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이전기업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자체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 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33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의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비 및 지방비를 교부한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타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해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이전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후 5년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후 10년이내 처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중 보조금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④ 지방이전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임대한 토지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이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⑤ 지방이전기업은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달인원 및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추징할 수 있다.

⑥ 지방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3년동안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전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지방이전기업이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내지 제7항 및 제9항의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제재조치의 내용과 보조금 환수계획 등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환수한 경우 환수된 금액중 국고지원비율 해당액은 국고로 반납하여야 한다.

⑨ 지방이전기업은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한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실투자금액을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액과 실집행액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지급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5조(실적보고)**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

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이행여부의 확인) 자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전기업으로부터 이전 및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청구하고 당초 제출한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 매년 3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행정적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이전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담관리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방이전기업의 인허가 및 원자재조달, 인력알선 등에 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불편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한도) 이 지원기준에 따른 국가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용하되, 이전 건당 최고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초과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지원 할 수 있다.

#### 부 칙(2006.5.2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제9조에 의한 보조금 지원은 지방이전기업의 분양 등 계약체결이 2004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한다.

②제9조의2에 의한 보조금 지원은 지방이전기업의 분양등 계약체결이 2004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하되, 지방이전기업의 분양등 계약체결이 2004년 4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2004년 4월 1일 이후 투자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은 고용 및 교육훈련이 2004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한다.

④지방이전기업의 분양등 계약체결이 2004년 4월 1일 이후부터 이 기준을 고시한 날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 기준을 고시한 날을 계약체결일로 간주하여 적용한다.

#### 【별표】 수도권내 대상지역(고시 제6조제4항 관련)

- ◆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율왕동·무의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제외)
  - \* 송도매립지는 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诰동·이诰동·삼诰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 ◆ 위 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낙후지역"은 제외

## 제천시공고 제 2007 - 720호

제천시 기업유치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운영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25일

제 천 시 장

**제천시 기업유치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기업유치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제천지역에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함.

3. 주요내용

- 수도권 이전기업과의 타 시·도 기업 지원비 구분(안 제25조 및 제26조)
- 공장중설시 시설투자비 지원(안 제27조)
- 사업지원서비스업 및 대규모 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안 제30조 및 제31조)
- 대규모의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안 제33조)
- 여성기업인 및 장애인기업인 특별지원(안 제34조)
- 산업단지 기업지원(안 제35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07년 6월 14일까지 제천시장(담당부서 : 투자유치팀)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641-5030)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제천시 천남동 시청길 15(천남동12-2)  
제천시청 투자유치팀(우편번호: 390-701)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